

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박중화 위원장님!

그리고 교통위원회 선배 ·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□ 안녕하십니까?

국민의힘 강남구 제5선거구 출신 김동욱 의원입니다.

지금부터 「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는

-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관한
가중처벌 규정(일명 ‘민식이법’)이 마련되었으나 어린이
보호구역 내 차량 통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도로에서 여전히
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므로 어린이들에게 충분한
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통사고 예방 장치를 강화하기
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.

□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,

-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장소에 통학로에서 「도로교통법」 제68조에 따른 도로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주의가 필요한 곳을 추가로 규정하였으며,
- 어린이 안전교육에서 「도로교통법」 제68조에 따른 도로에서의 금지행위와 통학로에서 보행자 통행 및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 수칙에 관하여 지도할 수 있는 규정 등을 명시하여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
-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